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01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01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2. 8 선고 99나22914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A 담당변호사 윤BA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신CA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B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9나22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5. 22. 피고와 사이에 신CA기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소외 이DA는 1994. 6.

1.자로 동생인 소외 이DB의 명의로 상호를 'KK산업'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군 ○○면 ○○리 418'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가공업을 하다가 1995. 1. 무렵 그 영업을 중단하고, 1995. 8.경부터는 '인천 ○구 ○○○○동 00-0'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주식회사 대신기공'을 경영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를 'KK산업' 명의로 계속 발행하면서 세무신고를 해오던 중, '주식회사 대신기공'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체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대신기공' 이름으로는 은행대출을 받기가 곤란하게 되자, 1996. 2.경 대출알선광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대EA기계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DC를 만나 그와 사이에, 그의 도움으로 폐업 중인 'KK산업'이 그 때까지도 가동중인 업체인 양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되 그 수수료조로 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KK산업'이 1996. 2. 22. 주식회사 대EA기계로부터 1,430만 원 상당의 선반을 매수하는 양 허위의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이DB로 하여금 'KK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동 00-0'로 하여 원고 석AC동지점에 피고의 신용보증하에 3,000만 원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게 한 사실, 이에 위 원고 지점은 이DB로부터 'KK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과 위에서 본 허위의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대출심사 및 신용보증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피고 사이에 1990. 5. 22.자로 작성된 신CA기금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신CA기금법, 동법 시행령, 피고가 정한 업무방법, 제규정, 자동신용보증취급요령 및 기타 피고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신용보증심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그 업무처리기준 중 하나로서 5,000만 원 이하의 신용보증업무취급시 적용되는 신용보증 간이심사기준표에서는 신용보증 적격요건의 하나로 '신용보증신청한 기업이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중에 있을 것'을 들고 있으며, 보증위탁계약위반 면책기준 6-1 나항에서는 원고가 위 요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전액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 지점은 그 직원인 소외

최DD로 하여금 위 간이심사기준표에 따라 'KK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심사를 하게 하였는데, 최DD는 그 심사를 하는 도중 'KK산업'의 위 신청서상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이DB에게 확인한바, 사업장을 '경기 ○○군 ○○면 ○○리 418'에서 '인천 ○구 ○○○○동 00-0'로 옮겼다는 말을 듣게 되어 1996. 2. 26.경 '인천 ○구 ○○○○동 00-0'로 가서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게 된 사실, 당시 '인천 ○구 ○○○○동 00-0'에는 '주식회사 대신기공'을 비롯한 수 개의 군소업체가 있었는데, 최DD는 그 현장에서 이DB를 만나지 못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KK산업'의 작업현장이 어디냐고 물어 그 직원이 안내한 곳에서 기계 3, 4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그 곳은 '주식회사 대신기공'의 작업장이었던 사실, 그 후 최DD는 1996. 2. 29. 'KK산업'이 당시 가동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간이심사기준표상에 현재 가동중이라고 기재한 사실, 위 원고 지점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하에 이DB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KK산업'이 보증신청일 당시 가동중이라고 잘못 믿은 원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착오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지만, 위 간이심사기준표상 신용보증신청 업체가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중일 것이 그 적법요건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원고가 심사하여 위 간이심사기준표상에 'KK산업'이 현재 가동중이라고 표시한 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동기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한 원고가 만일 위 'KK산업'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1998. 8. 3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1998. 9. 3.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CA기금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신용보증계약 및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